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가단536591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민
4. D
변 론 종 결 2024. 2. 22.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67,769,190원 및 그중 147,485,194원에 대하여는 2022. 11. 15.부터, 19,689,190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각 2023. 11. 21.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 11. 10.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10. 접수 제1615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2. 8.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2. 접수 제12254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22. 1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29. 접수 제1762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경영하던 E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A가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해당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변경보증금액)	보증기한 (변경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액
1	2017. 9. 19.	180,000,000 (144,000,000)	2018.9.18. (2022.9.15.)	F은행	2017. 9. 19.	200,000,000
2	2021. 4. 7.	19,000,000	2026.4.7.	G은행	2021. 4. 7.	20,000,000

2) 이 사건 보증약정 제6조(사전구상) 제1항 제9호는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로부터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에게, 소외 F은행은 2022. 9. 16. 대출금 원금이 연체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소외 G은행은 2022. 10. 7. 신용보증부실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각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2022. 11. 15. F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47,485,194원을, 2023. 9. 5. G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9,689,190원을 각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21,386원을 지출하였다. 위약금은 473,420원(1차 보증)으로 산정된다.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1. 10. 피고 B와 사이에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다음 위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10. 접수 제161556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22. 피고 C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2. 접수 제1225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9. 피고 D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29. 접수 제1762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는 위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로 무렵 원고에 대한 167,174,384원의 채무,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9,973,117원의 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5,230,284원의 채무, 주식회사 H에 대한 31,643,012원의 채무, 주식회사 I에 대한 약 92,307,691원(= 57,692,307원 + 34,615,384원)1) 원의 채무 합계 316,328,488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 172,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67,769,190원(= 147,485,194원 + 19,689,190원 + 121,386원 + 473,420원) 및 그중 147,485,19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2. 11. 15.부터, 19,689,1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3. 9.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1. 21.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피고 B, D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2022. 11. 10.자 대물반환예약, 2022. 1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고,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2022. 9. 16.경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위 각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 C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2022.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A가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피고 A는 2022. 8.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연이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인정되는 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원고가 각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2. 11. 10.자 대물반환예약, 2022.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22. 1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A는 위 각 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B,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의 2022. 11. 10.자 대물반환예약, 2022. 8.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2022. 11.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에게, 피고 B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피고 C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D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피고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소외 K의 사위이다. 피고 A에게, K이 2019. 1. 22. 17,250,000원, 2019. 4. 12. 14,000,000원, 2020. 1. 13. 19,000,000원의 합계 50,250,000원을, 피고 B이 2021. 12. 8. 8,800,000원, 2022. 3. 8. 2,600,000원의 합계 11,400,000원을 각 빌려주었다. 피고 A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어 위 대여금을 당장 변제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피고 A, L, K이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피고 B, 피담보채권 6,000만 원으로 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선의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면 이미 발생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 B도 피고 A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위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2022. 3. 8.자 2,600,000원 송금내역에 ‘A(겅돈)’이라 기재되어 있고, 차용증이나 피고 B, K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A에게 각 송금된 돈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 C의 전 남편인 소외 M은 2018. 9. 20.부터 2019. 11. 4.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22. 8.경 1,87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M은 피고 C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돈이 약 5,0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피고 A, 피고 C, M이 합의하여 피고 C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체 대여금 중 370만 원은 피고 A가 M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선의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는 이미 발생한 채무인 점, ② 차용증, M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M이 피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 C이 M으로부터 약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약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 D은 2018. 12. 20.부터 2021. 1. 20.까지 계원 26명으로 구성된 20일계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A는 계원이었다. 피고 A는 2019. 5. 21. 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매달 불입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400만 원을 6개월간(2020. 8.부터 2021. 1.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D은 미지급 계불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로부터 2022. 11. 29. 차용증을 교부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선의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는 2021. 1. 20.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2. 11. 29.에서야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 점, ② 피고 D이 제출한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액이 30,000,000원임에도 채권최고액은 50,000,000원으로 관행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약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별지